



산업통상자원부  
MINISTRY OF  
TRADE, INDUSTRY & ENERGY

<http://www.motie.go.kr>

## 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

3년의 혁신,  
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1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윤기환 과장, 신필수 연구관(043-870-5451)  
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, 김효정 사무관(043-719-3403)  
환경부 화학물질과 이병화 과장, 이승준 사무관(044-201-6770)

### ‘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관리 부처 변경’

- 생활화학용품: 환경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(‘15.4.1.)
  - 물티슈: 식품의약품안전처 「화장품법」(‘15.7.1.)
- \* 관련업계 대상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개최(12월 3일, 건설기술회관)

- 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.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헌), 환경부(장관 윤성규),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,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‘15. 4월부터 환경부가,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‘15.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.
- 아울러,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,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.

#### 〈 환경부 관리품목 〉

생활화학제품		살생물제품
품공법 고시(8종)	비관리품목(7종)	
세정제, 방향제, 접착제, 광택제, 탈취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	방청제, 김서림방지제, , 염·탈색제, 문신용 염료	방충제, 소독제, 방부제

- 이에 따라, 국표원·환경부·식약처가 합동으로,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12월 3일(수) 건설기술회관(서울 논현동 소재)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.
  -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,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.
- 금번 생활화학용품과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소관 부처 변경은,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.
-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.
  - 우선,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.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,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, 발암성·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·위해성 등을 검토하여 금지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인체에 위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에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, 독성,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,
  -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,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

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,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.

※ 현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,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(보존제, 자외선차단성분, 색소 등)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신필수 연구관(☎ 043-870-54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[붙임1] 품목별 변경사항

품목명	변경 전		변경 후
<b>생활화학 가정용품</b> (세정제, 방향제, 접착제, 광택제, 탈취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)	<b>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 (산업부)</b>		<b>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 (환경부)</b>
	대상	제조·수입업체	제조·수입업체
	의무사항	자율안전확인신고	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* 안전표시기준 준수
	요건 확인기관	-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-화학융합시험연구원 -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-의류시험연구원	• 신고 -지방환경청 • 기준준수 -한국환경산업기술원 -한국환경공단 -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-화학융합시험연구원 -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-의류시험연구원
	구비서류	-자율안전확인신고서 -사업자등록증 사본 -제품설명서(사진 포함) -안전성검사 결과서 -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-물질 안전성 자료	• 신고 -신고자 정보(선임된 자 정보) -유해화학물질 명칭·분류· 유해성정보·용도 -제품 정보·용도 • 기준준수 -분석의뢰서
	인증마크	 신고필증번호 :	자가검사로 대체
	표시사항	-품명 -종류 -모델명 -제조연월 -제조자명 -수입자명 -주소 및 전화번호 -제조국명 -성분 -독성 -중량 또는 용량 -액성 -사용상 주의사항 -위험표시 등	• 제품정보 -품목 -모델명 -용도 -중량 용량 -액성 -제조연월 -표준사용량 -사용방법 -사용상 주의사항 • 성분정보 -성분 기능 -유해성분 정보 (명칭, 기능, 함량, 그림문자, 유위해성문구 등) -위험표시 • 업체정보 -판매자정보 -제조자정보, 제조국명 -수입자정보, 수입국명 등
시점	-국내제조 : 출고 전 -수입 : 통관 전	-국내제조 : 출고 전 -수입 : 통관 전	

\* 비관리품목이었던 문신용 염료, 소독제, 방충제, 방청제, 미생물 탈취제, 김서림 방지제, 방부제, 자동차용 스프레이, 물체 염·탈색제 등도 「화평법」에 따라 관리될 예정

품목명	변경 전		변경 후
<b>물티슈</b> (인체세정용)	<b>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(KC인증)</b>		<b>「화장품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)</b>
	대상	제조·수입업체	제조·수입업체
	의무사항	자율안전확인신고	제조업, 제조판매업 등록
	요건 확인기관	-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-화학융합시험연구원 -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-의류시험연구원 -FTI시험연구원	(전국 권역별 6개)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	구비서류	-자율안전확인신고서 -사업자등록증 사본 -제품설명서(사진 포함) -안전성검사 결과서 -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-물질 안전성 자료	-등록신청서 -진 단서 -시설 명세서(제조업) -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규정서 (제조판매업) -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(제조판매업)
	인증마크	 <small>신고필증번호 :</small>	없음
	표시사항	-품명 -모델명 -종류 -성분 : ①부직포 부분 ②액체 부분(전성분) -제조연월 -제조자명 -수입자명 -주소 및 전화번호 -사용상 주의사항 -기타 주의사항 등	-명칭 -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의 상호 및 주소 -제조에 사용된 성분 -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-제조번호 -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 -가격 -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-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	시점	-국내제조 : 출고 전 -수입 : 통관 전	-국내제조 : 제조 전 -수입 : 통관 전

## [붙임2] 설명회 개최 안내

- 일 시: 2014년 12월 3일 14:00~18:00
- 장 소: 건설기술회관(서울시 논현동 소재)
- 주 최: 국가기술표준원, 환경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- 주 관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/ 환경산업기술원
- 세부 일정:

시간	발표내용	발표자
14:00~14:30	등록	-
14:30~15:00	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및 부처이관 추진배경	국표원
15:00~16:00	「화장품법」 관리계획 및 준비사항	식약처
16:00~16:20	휴식시간	
16:20~17:20	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 및 제도설명	환경부

- 약도 :



지점명	우편번호	주소	전화번호	팩스번호
본점	135-701	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	02-3449-8888	02-3449-8903

### 교통안내

**지하철**

● 7호선  
 학동역 하차(10번출구) 도보 5분 소요  
● 3호선  
 압구정역 하차(2번출구), 3011(지선) 도보 15분 소요

**버스**

관세청역 ■ 간선 141, 401, 640  
 관세청역 ■ 지선 3011, 3414, 4431  
 관세청역 ■ 순환 41